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김연학
	담당부서 (과)	벤처투자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이은청		연락처	044-204-7711
	과장	이권재		이메일	kimyh6887@ 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7조제1호, 제24조제2항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50조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8.23~2023.10.0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투자·용자가 결합된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확산을 위해 투자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추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 신설(벤처투자법 일부개정 '23. 4. 18.)에 따른 세부요건 규정								
	7.규제내용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 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 시 벤처 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벤처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벤처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td><td>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개인투자조합(3,227개, '22년)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벤처투자조합(1,737개, '22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벤처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개인투자조합(3,227개, '22년)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벤처투자조합(1,737개, '22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벤처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창업기획자(418개사, '22년) 개인투자조합(3,227개, '22년) 벤처투자회사(231개사, '22년) 벤처투자조합(1,737개, '22년)								
9.규제목표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초기 창업기업 투자 촉진과 투자 목적회사의 차입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활성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전환의 조건을 연동하는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2.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제1호에 따른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계		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일 부터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계약일 전 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4.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 -----.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1. -----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가. ~ 다. (생략)

<신설>

2. 3. (생략)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략)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건부지분 전환계약의 체결

2. 3. (현행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삭제>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차입 또는 청산

8. 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 개요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
-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 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



대출 계약 체결

- ☑ 계약기간 내 투자유치하는 경우 → 전환사채 발행
- ☑ 계약기간 내 투자유치 없는 경우 → 원리금 지급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비교 >

구 분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조건부지분인수계약 ('20.8 도입)
대상	혁신 창업·벤처기업 (주로 초기기업 중심으로 활용)	
성격	계약+채권형 투자방식 (전환사채 인수권+대출)	계약+지분형 투자방식 (만기·이자 없는 지분 인수권)
전환시기	후속투자 유치 시 책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전환가격 설정	후속투자 유치 시 책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지분가격 설정
수익비교	원금·이자 보장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中위험·中수익 구조	후속투자 실패시 원금보장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高위험·高수익 구조

- (투자목적회사) 투자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가능
-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에 따른 위험을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절연하고, 상근인력·영업소 등 고정비 최소화로 투자에 대한 회계적 투명성 확보 가능

□ (추진 배경) 투자·용자가 결합된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확산을 위해 투자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추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 신설을 담은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3.5.25.)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에 위임

○ (정부개입 필요성)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상법」 및 종전 벤처투자법에서 규정된 투자방식이 아니므로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 필요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11.4)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차입·청산시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에 변경등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 중요사항에 이를 반영할 필요

< 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 의무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2 제7항) >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⑥ (생략)

⑦ 법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 및 재산의 운용을 하여야 한다.

1. 단일 법인 또는 단일 사업 등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려는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액은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청산을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
	내용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요건 명시를 통해 계약체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투자자금 공급 가능 •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변경 등록을 통해 투자목적회사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관리 가능	• 기업가치 산정방식, 지분전환 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협의 필요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변경등록을 위한 행정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규제대안에 대한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 간담회 (협회, 벤처투자회사, 창업투자유한책임회사등)	벤처투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7.18)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초기 창업기업 투자 촉진과 투자목적회사의 차입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활성화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제1호), 후속 투자유치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제3호, 제4호)*는 법에 명시된 무담보 전환사채의 발행의 사전 약정에 대한 부수적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정의 타당성이 있음

* (투자유치 성공) 전환사채 발행계약일 전까지의 원리금 상환의무 소멸
(투자유치 실패) 원리금 상환

- 계약 체결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에 대한 고지 의무 부여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라 보유지분의 영향을 받는 주주, 타 계약당사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타당성이 있음
- 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중요사항에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차입·청산, 주주·사원의 변동을 포함한 것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별도 행정절차 없이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벤처투자법 제51조의2,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2)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사항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은 계약 성립의 원칙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가 폐지·완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몰 설정이 부적절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도 일몰 미설정)
-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등록·변경등록 필요사항은 부수적 절차의 신설·변경에 해당하며, 경제주체(투자기관 등)의 본원적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일몰제로 관리할 실익이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명시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은 기업가치 평가 시점을 유예하면서 신속하게 투자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투자목적회사의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에 포함토록 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23.7.18)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요건 명시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목적회사 관련 벤처투자조합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